
2013년 관세청 업무추진 계획

2013. 4. 3

관 세 청

순 서

I. 정책추진 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	113
1. 정책추진 여건	115
2. 정책추진 방향	116
II. 2013년 주요정책 추진방안	117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119
2. 強小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121
3.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수출입 지원체계 확립 ...	123
4. 국민생활·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	125
5.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외거래 질서 확립	127
6.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외교 전개	129
7. 지속가능한 관세행정 성장기반 구축	131
III. 부처간 협업과제	133
1. 관세청-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135
2. 수입물품에 대한 범정부적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	137
3.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부처간 공조 강화	139

I. 정책추진 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

1. 정책추진 여건
2. 정책추진 방향

1

정책추진 여건

① 새 정부 출범과 국가 재정수요 확대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하경제 양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식품안전 강국 실현 등이 국가적 중요과제로 대두
- 복지지출 확대 등 정부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수입액과 환율 등 세수지표 개선 전망은 불투명

② 경기회복 지연과 新보호무역주의 확대

-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美경제 회복의 지연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 지연
- FTA 확대로 관세장벽은 점차 완화되는 반면, 비관세장벽(통관절차 등)은 오히려 강화

③ 합법적 대외거래를 가장한 불법행위 증가

- 교역량 증가에 따른 지재권 침해·원산지 조작·마약 거래 등 불법·부정무역이 꾸준히 증가*

* 범칙금액(조원) : ('09)5.5 → ('10)5.6 → ('11)5.9 → ('12)6.5

④ 국민생활과 관세 행정의 밀접성 증대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가무역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의 관세행정에 대한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
-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중시 경향에 따라 국민건강·안전·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추진 방향

- 지하경제 양성화 · 중소기업 육성 · 수입식품 안전 확보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실현을 충실히 뒷받침
- 중장기 視界로 관세행정 개혁 등 미래준비도 착실하게 추진

금년도는 새 정부 출범 첫해임을 감안하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의 추진기반을 마련

중점 추진과제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수출입 지원체계 확립
- 국민생활 ·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외거래 질서 확립
-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외교 전개
- 지속가능한 관세행정 성장기반 구축

Ⅱ. 2013년 주요정책 추진방안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2. 强小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3.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수출입 지원체계 확립
4. 국민생활·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5.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외거래 질서 확립
6.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외교 전개
7. 지속가능한 관세행정 성장기반 구축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 서울체계 개편없이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세수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1) 이행계획

① 소관 세수목표 달성

- 복지정책의 확대 등 증가하는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관 세수목표(69.3조원*)를 차질없이 징수

* 전체 국세 216.4조원 중 32.0% 수준

- 관세행정 기능·인력을 지하경제 척결과 세수관리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

*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다국적 기업 전담부서·관세조사팀 확대

② 지하경제 형성행위에 대한 전략적 단속

-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群과 품목群에 집중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조사비율 확대] (현행) 0.15% → ('13) 0.25% → ('17) 1%

- 이전(移轉)가격을 악용한 탈세,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기업*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세조사 강화

* 국내 다국적기업(5천여개) : 수입비중 33%, 세액비중 41%, 추징비중 65% 차지

- FTA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예: 생강 377.3%)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 실시

* 제3국 물품 우회수입, OEM 등 글로벌 소싱 제조물품 등

③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FIU 고액현금거래정보에 대한 활용권한 확대, 과세자료 미제출·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과세정보 접근성 제고
- 저세율 수입원재료를 고세율로 환급 받는 등 FTA 확대에 복잡해진 세율구조를 악용한 과다환급을 막기 위한 환급제도 개선*
 -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
-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을 통한 세액탈루 방지를 위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집주기를 연1회에서 실시간으로 개선

◇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5個年 : 2013~2017) ⇨ <u>추가세수 9.8조원</u>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1.4조원	2.0조원	2.1조원	2.1조원	2.2조원	9.8조원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13.3월 신설)을 중심으로 월별·분기별 세수를 모니터링하고 과제이행 실태 점검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소관세수 목표달성	2분기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회의 개최	4월
	3분기	· 상반기 세수분석 및 목표달성 대응책 마련	7월
	연 중	· 세수현황 점검 및 분석	수 시
지하경제 형성에 대한 전략적 단속	2분기	· 수출자·생산자 대상 상대국 현지검증 활성화	5~6월
	4분기	· 관세조사 대상의 단계적 확대	10월
	연 중	· 다국적기업, 농산물 등 고위험 물품 원산지 검증 · 고위험 기업·품목群에 대한 관세조사 강화	수 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분기	· FIU 「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 환급방법 조정 고시 제정·시행 ·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용 실시간 입수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	4월 4월 5월
	3분기	· 반기별 다국적기업 위험도 분석	7월
	연 중	· 다국적기업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감시 · 가격동향 분석결과 활용 및 해외현지 정보입수 활동	수 시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되도록 체계적 지원 강화

(1) 이행계획

① 중소기업 친화형 FTA 종합지원체제 운영

-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컨설팅제* 도입
 - * 중소기업의 FTA 활용단계에 따라 스스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원
- 동종동질 물품을 반복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원산지 발급 신청시 별도 심사없이 자동 발급하는 등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 FTA 전문인력 양성, 취업박람회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FTA 실무인력 부족 해소 지원

* [事例] FTA교육·취업박람회를 통해 대학생 취업 지원

②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중기청·금융기관과 함께 AEO 공인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을 확대
 - * ('11) 10개 → ('12) 17개 → ('13) AEO인증 대기업의 하도급업체까지 확대
- 통관애로 다발국(多發國) 세관과의 실무협상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 * ['12년] 석유시추선 면세통관(650억 절감) 등 통관애로 353건 해소, 기업비용 936억 절감
-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시 중소·중견기업 우대

* 전국 13개 지역에 신규특허 추진하여 9개 지역 업체 승인 → 4개 지역 추가 공고

③ 중소기업 경영지원의 지속적 확대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통관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규제 차등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 * 규제부담 완화 적용대상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별도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마련
-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담보제공없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 부여
-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자 등록*을 유보하는 등 기업회생을 지원
 - * 은행연합회 정보 제공(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 등)
- 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제*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 → 정기 관세조사 유예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장 주관의 주기적 성과점검 실시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중소기업 친화형 FTA 종합지원체제 운영	2분기	· FTA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책 수립 · FTA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4월
	4분기	·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를 위한 고시개정 · FTA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10월
	연 중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수 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분기	· '13년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컨설팅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 관세관·민간 전문가의 통관환경 설명회 개최	4월 ~ 4월 5월
중소기업 경영지원 지속 확대	2분기	· 대중소기업간 규제차등화를 통한 성실 중소기업 지원	4월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심사 유예방안 마련	6월
	연중	·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	연중

◇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수출입 물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제고

(1) 이행계획

① 무역량 증가에 따른 수출입통관 업무수행체제 개편

- 수출입 기업을 성실도에 따라 구분하여 성실업체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는 강화*

* 성실업체 범위 확대(AEO A³⁺→A) 및 불성실업체 기준 마련

- 특송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곳에서 분산처리하던 화물 검사를 한 곳에서 집중처리하는 체제로 전환*

* 인천공항 특송화물 전용물류센터 건립 : 로드맵 마련·설계('13) → 시공('14~'15) → 가동('16)

-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화물을 검사하는 모바일 기반의 원격 통관관리체제 구축*

* 스마트폰 활용 실시간 현장 통관시스템, 영상검사시스템 도입 추진 등

② 수출입 화물정보의 정확성 제고

- 수출입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하던 품명·용도를 표준화된 코드로 입력토록 개선하여 수출입 신고의 정확성 제고

* 관세율표상 '기타' 세번 수는 26%이나, 수입신고 건수의 55%가 '기타' 세번으로 신고

- 해상으로 수입되는 화물정보를 수출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입수·분석*하여 우범화물의 조기식별 및 검사의 효율성 제고

* 해상·항공 수출화물('12.4월)·항공 수입화물('12.6월)에 이어 해상 수입화물까지 확대

③ 기업 편의제고를 위한 통관서비스 제공 확대

- 세관 방문없이 모든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입 신고 첨부서류의 전자문서 제출제도를 확대* 시행

* 수입신고('12)에 이어 수출신고('13)까지 확대

- 경기흐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무역경기 확산지수*를 개발·공표하는 등 무역통계 서비스 고도화

*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13.3월) 및 주기적 공표(월단위)

-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정보를 입출항 수단·루트별로 분석·제공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장 주관의 주기적 성과점검 실시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업무수행 체계 개편	2분기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점검	6월
	연 중	· 특송화물 전용물류센터 설계 · 모바일 기반 원격통관체제 구축 설계	연중 연중
수출입 화물정보의 정확성 제고	2분기	· 품명·용도 표준화 시범사업	6월
	4분기	· 해상수입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범 운영	12월
통관서비스 제공 확대	2분기	· 우수기업대상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화 시행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점검	5~6월 6월
	3분기	· 수출 신고 서류 전자문서 제출 · 무역경기 확산지수 개발·공표	7월 7월
	4분기	· 물류비용 정보 제공	12월

◇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에 해를 끼치는 불량 먹거리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관세국경 관리 강화

(1) 이행계획

① 국민생활 위해물품의 효과적 차단

- 국민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불량 먹거리·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마약류 단속 전담조직을 확대·신설*하는 한편, 휴대품 등 밀반입 경로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마약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
 - *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관실, 국제마약정보센터 신설 등
- 환경오염·생활 폐기물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동식물의 국내 불법 유입을 국경단계에서 억제

②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 단속 철저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 협의체 구성(주관 : 관세청장, 기재부·산자부·농관원·전국 광역단체 참여)
- 용도전환(비식용→식용)·국산둔갑 우려가 많은 식품 등 사회적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품목 확대
- 트위터·카카오톡 등 신종수단을 활용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민간 사이버 감시단' 등을 활용한 단속 추진

③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관세국경 감시단속 강화

- 해양수산부 선박위치 추적시스템을 우리청 감시시스템과 연계·운영하는 등 공항만 감시·단속 인프라 효율화
- 총기류·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국정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활동 강화
- 공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첨단 감시장비 도입* 및 세관직원의 안보위해물품 적발능력 제고

* 폭발물 탐지기·X-Ray 검색기·고속 감시정 등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장 주관의 주기적 성과점검 실시
- 수입물품 안전점검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입물품 안전 강화 추진실적 점검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국민생활 위해물품 효과적 차단	2분기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대책 추진 · 신종마약 주요 밀반입 경로 특별단속 실시 · 식품 위주 세관장 확인 대상 확대	4월 6월 6월
	4분기	· 불법 폐기물·종자 등 세관장 확인 대상 확대	12월
	연 중	· 수입식품 검사·적발 강화	수 시
불법 수입물품 유통단속	2분기	· 협의체 및 세관장의 시중 원산지표시단속 근거 마련	4월
	3분기	· 협의체 세부운영방안 수립(시행령 개정안 제출)	7월
	연 중	· 민·관 협의회를 통한 원산지 둔갑 정보교환 확대 · 원산지 표시 단속, 유통이력 관리	수시 수시
관세국경 감시단속 강화	2분기	· 문형금속탐지기 22대 도입·배치	4월
	3분기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입출항 정보 실시간 연계	9월
	연 중	· 식약처, 국정원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	수시

◇ 무역규모 2조달러 시대 ·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1) 이행계획

① 反사회적 불법 대외거래행위 중점 단속

-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가 수입신고를 강요*하는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무역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 * 저가신고 강요 행위를 적극 입증하여 관세포탈 공범 · 교사범으로 고발
- 정부조달 · 국가보조금 품목* 등을 고가신고하여 국가로부터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비리업체에 대한 기획단속 강화
 - * 장애인 용품, 노인복지 용구, 의료기기, 치료소모품 등
- 상습적으로 고가사치품을 불법 반입하는 기업대표·유명인 등 사회지도층의 행위에 대해 연중 수사 단속

② 무역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 재산도피 ·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형법상 사기 · 횡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 등 지속적 노력 전개
 - * 사기 · 횡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관련 사경법 개정의견 제출(법무부)
- 수출입거래에 한정되던 외환검사권을 용역 · 자본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단속 기반 확립
 - * (기존) 수출입거래 + 수출입거래 관련 용역 · 자본거래 → (확대) 수출입거래 + 모든 용역 · 자본거래
- 수출입기업의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혐의업체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③ 불공정 거래단속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재권 보호대상의 확대*에 대비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기존) 상표·저작권·식물품종·지리적표시권 → ('13.7월) 특허·디자인권 추가

- 금(Gold)·다이아몬드 밀수출입, 농산물 조직밀수 등 기업형 무역범죄 엄단을 위한 수사당국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확대
-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사당국과 실시간 밀수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로 해외공급망까지 발본색원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장 주관의 주기적 성과점검 실시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반사회적 불법 대외거래행위 중점 단속	2분기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 중계무역 악용 재산국외도피 기업 기획조사	4월 6월
	연 중	· 사회지도층·대기업 불법행위 단속 · 국가재정 편취 등 사회적 비리기업에 대한 기획단속	수시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2분기	· 자본거래 검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 · 사기·횡령 수사권 확보 관련법 개정 협의	4월 4월
협력네트워크 구축	2분기	· 국세청 탈세 정보 공유 지침 마련	4월
	연 중	· 조직밀수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수시

◇ 적극적인 관세외교의 전개로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개도국 관세행정을 지속적 지원

(1) 이행계획

① 기업지원 중심의 국제 관세활동 전개

- 교역량·FTA 발효 등을 고려한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하여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 * (現) 미국 등 5개국 체결 → ('13) 한·중 체결 추진(한·중 정상회담시) → EU·인도 등과 지속 확대
- 첨단 IT제품 등 수출 주력상품이 상대국의 불합리한 품목분류로 인해 高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WCO 등을 통한 국제활동 강화*
 - * WCO 품목분류 위원회 제안, 정보기술협정의 품목(관세율 : 0%) 확대 등
- FTA 체결국간 품목분류·원산지규정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이행협력을 주도하여 우리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
 - * ('12)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과 관세위원회 등 9회 참석

② 국제사회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확대

- 개도국 관세행정의 업무재설계 지원*과 전자통관시스템 해외보급 확대로 개도국 세관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 * ('13) 우즈베키스탄,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4개국, 28억)
- 세관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개도국 세관직원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AEO 제도 등 우리나라 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지속 전파
 - * ('12) 총 23회(49개국, 356명) 개최 → ('13) 전년대비 10% 확대(54개국, 390명)

③ 국제 관세역량의 지속적 강화

- BRICs · ASEAN 등을 중심으로 관세관을 증원하는 등 관세외교무대에서 입지 확대*

* (관세관) 6개국 · 9명 파견, ('13년) 3명 증원(인니, 브라질, 러시아) 중점 추진

- APEC 공동이행계획, ASEM 액션플랜 등 관세관련 국제회의에서 세관통관절차 선진화 논의 주도

* APEC 싱글윈도우 개발경험 소개 등 8개 병목점 해결방안 모범사례 전파확대

- 위험관리 · 원산지 등 주요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훈련을 강화하여 국제 관세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

* WCO 인증교관(6명)→('13) 2명 추가 인증 / 교관 후보군(23명)→('13) 4명 추가 확보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장 주관의 주기적 성과점검 실시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기업지원중심 국제관세활동 전개	2분기	· 2017년 HS 개정 제안(LCD 모듈 등 3개 품목) ·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4~5월 5~6월
	3분기	· 터치패널 등 2개 품목 WCO 품목분류위원회 상정	9월
	연 중	· 17개 품목 ITA협정 상정 및 승인 추진	연중
개발협력 확대	2분기	· 페루 등 4개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추진	5~12월
	연 중	· WCO AP회원국 등 총 50여개 개도국 세관직원 연수(17회)	2~12월
국제 관세역량 지속적 강화	3분기	·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워크숍 개최	7~10월
		· WCO HS 위원회 W/P 의장활동 · ASEM 관세청장회의 등 참석	9월 10월
	연 중	· 관련기관과 인니 관세관 등 증원 협의	연중

◇ 무역량 급증·관세행정 기능 확대 등에 대응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

(1) 이행계획

① 중장기 발전전략의 이행 토대 마련

- 미래 관세행정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세관의 성과관리 자율성 확보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관세법 및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관세법령 인프라 구축
-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적법성 확보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업무프로세스 개편

- 對民 접점에 있는 일선세관의 기능을 통관 등 수출입지원 위주로 재편하여 對고객 행정서비스 기능 제고
- 세관 물품검사조직을 수입물품별 조직체계에서 기능별 체계로 전환*하여 검사대상 선별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 [종전] 동일부서에서 검사선별과 검사 기능 동시 수행 (例示 수입1과, 수입2과)

[개선] 검사선별과 세관검사 기능을 분리(例示 검사선별과, 검사과)

- 조사·심사 기능은 본부세관 단위로 廣域化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액탈루방지 등 신속 통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본청 심사국의 관세조사 정책기능과 조사국의 범칙조사 정책기능 통합

③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차질없는 구축

- 무역량 증가와 관세행정 기능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통합·경량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현행) 58개 시스템 → (향후) 16개 시스템

-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입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추진기획단·추진위원회를 통한 과제 추진실적 및 적정성 점검
-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장 주관의 주기적 성과점검 실시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중장기 전략 이행토대 마련	2분기	· 성과관리 개편	3월
		· 중장기 계획(안) 마련	4~5월
		· 중장기 계획 추진기획단·추진위원회 구성	4~5월
		· 관세법 분법 연구용역	4~7월
	3분기	· 관세법 분법관련 법개정(안) 마련 및 협의	8~10월
4분기	· 중장기 계획 추진실적 점검	11~12월	
연 중	· 연간 감사계획 및 청렴시책 수립·추진		
업무프로세스 개편	2분기	· 업무프로세스 개편(안) 마련 · 직제개정관련 업무협의(안행부, 법제처)	4~5월 6~7월
	3분기	· 직제 개정	7~8월
국가관세종합 정보망 구축	2분기	· 한시직제(안) 협의(안행부)	4~6월
	3분기	· 직제 개정	7~8월

Ⅲ. 부처간 협업과제

- 1. 관세청-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 2. 수입물품에 대한 범정부적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 3.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부처간 공조 강화**

1

관세청-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1) 협업 필요성

- 관세조사는 수입비중이 크고 국내외 본·지사間 거래 등을 이용하는 무역업체가 주요 대상 →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불법유형 : D社] 본지사간 수입가격 조작 → 추정규모 약 6천억원

- 무역업체가 국세청에 정기 제출하는 세적자료 등은 관세청 세원발굴에도 중요한 정보이나,

-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세원포착 활용도 낮음

-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공유 확대함으로써 신규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필요

[활용예시]

(국세청)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세무서에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

(관세청)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상의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

(2) 주요 협업내용

- 과세정보 공유 확대방안

- (정보교환 확대) 기존 공유자료 이외의 양 기관 보유정보 교환을 확대하여 세수 확보자료로 활용

* 우리청은 국세청 보유정보 중 25종 요구(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출자 명세서 등)

- (정보공유 기반 확충) 「관세청-국세청간 정보공유 협의체(가칭)」 구성·운영, 정보공유 근거규정* 보완 등 정보공유 인프라 강화

* 관세법 37조의2, 26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조의2 등

- (기존자료 활용제고) 기존 공유자료를 통하여 세원발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협의

* (예시)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휴폐업 및 세금계산서 자료를 관세조사시 활용

□ 과세자료 공유 현황

• (관세청→국세청) 우리청에 접수된 모든 기업의 통관·환급 DB(정기) 및 국세체납자에 대한 환급내역 실시간 제공

제공DB	대상	제공주기
수출신고 수리내역(수출가격 등 22개항목)	전 사업자	매월
수입신고 수리내역(수입가격 등 27개항목)	전 사업자	매월
수출환급 신청내역	전 사업자	연1회
관세환급금 발생자료	국세 체납자	실시간

• (국세청→관세청) 수출입기업 또는 관세체납자에 한정하여 사업자 등록·세금계산서·국세환급금 자료(정기) 확보

제공DB	대상	제공주기	활용
사업자 등록·휴폐업 내역	수출입기업	매월	통관고유부호 생성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자료	수출입기업	연2회	관세·범칙조사
국세환급금 내역	관세 체납자	연6회	체납
골프회원권, 보유주식자료 등	관세 체납자	요청시	체납

[3] 추진계획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과세정보 공유 확대	2분기	· 기존 공유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4월
		· 추가 세원발굴을 위한 상호 보유정보 및 필요정보 확인, 발굴	5월
		· 정기 과세정보공유 협의회 추진	매분기
	3분기	· 과세정보공유 근거규정 보완 추진	~12월

(1) 협업 필요성

- 수입물품 원산지관리는 소비자 안전 등 권익을 보호하고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생산자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 수단
-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등 공조체제 미흡으로 기관별 일회성 단속, 불필요한 중복단속 및 사각지대 발생 초래

* (공산품) 관세청, 지자체 (농축수산물) 관세청, 지자체, 농관원, 농림수산물검역본부

(2) 주요 협업내용

-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정부의 원산지 단속활동 체계적 조율
 - (주관기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국적 단속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는 관세청이 협의체 운영 추진
 - (참여기관) 농관원·지자체·경찰 등 단속기관 중심으로 구성, 필요시 산업부·농식품부 등 법률 소관부처도 참여
- (체계적 원산지 관리) 각 기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수입자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소유통단계 추적 관리
 - (정보공유) 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 구축
 - * 기관별 단속계획, 위반업체 정보, 통관 및 유통정보 등
 - (합동단속) 명절·김장철 등 취약시기 합동단속 실시

(3) 추진계획

- (협업체 발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 구성('13년 2분기)
 - 매 분기별 기관별 단속정보 공유, 인력지원 및 합동단속 방안 논의

- (법령정비) 협업체 구성에 필요한 법적근거 신설(관세법 개정)
 - 세관의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단속권한 근거도 명확화
 - * (유통단계) '07년 이후 대외무역법에서 지식경제부의 단속권한을 위탁받아 수행
 - * (유통단계 단속실적) ('07) 211억원 → ('11) 5,004억원 → ('12) 9,668억원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협업체 발족	2분기	· 범정부 원산지표시단속 협업체 발족	6월
	연중	· 관계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및 정보교류 실시	수시
법령정비	2분기	· 협업체 법적 근거 및 세관장의 시중유통 원산지 표시 단속근거 마련(관세법 개정안 제출)	4월

(1) 협업 필요성

- (FTA 활용지원 중복)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여러기관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컨설팅 등에 중복 지원

[기관별 FTA 활용컨설팅 지원현황('12년)]

구 분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수행기관 (수행인력)	본부·직할세관 (관세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법인)	지방청, 중진공 (관세사)
컨설팅 내용	• 원산지시스템 구축 • 인증수출자 • 검증대비 사전진단	• 원산지증명 • 원산지시스템 구축	• 원산지증명 • FTA 대응전략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과 연계가 부족
- (FTA 통관애로 증가) 상대국 세관의 자의적인 협정 해석,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기업의 해외 FTA 활용 애로 증가
 - * FTA 활용 애로 건수 : ('10) 47 → ('11) 70 → ('12) 131
- 관세청·외교당국·KOTRA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부족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차질

(2) 주요 협업내용

- (FTA 활용지원 역할 분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기관간 FTA 활용 컨설팅 분야를 조정하여 FTA 활용 지원 효과 제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검증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행하고,
 - * 간접검증(한-EU FTA, 한-미 FTA물품중 섬유제품)
 - 해외시장 진출은 산업통상부,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은 중기청 중심으로 추진

-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세청과 상대국 공관·KOTRA 등 해외 상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대국의 FTA 이행실태 및 불합리한 관행·제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협조
 - 해외 현지에서의 효과적인 FTA 통관애로 파악 및 해소를 위하여 주요 FTA 상대국에 관세관 파견 확대 추진

(3) 추진계획

- (FTA 활용 컨설팅) 汎국가차원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FTA 활용 종합지원대책 마련
 - 산업부 등 중앙부처,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FTA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FTA 기업지원협의회 운영
- (FTA 통관애로 해소) 「FTA 통관애로 해외현장 해결팀」을 운영하여 지역별·협정별 차별화된 통관애로 해소 활동 전개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FTA 활용 컨설팅	2분기	· 중소기업 FTA 종합 지원대책 마련 · FTA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4월
	4분기	· FTA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10월
FTA 통관애로 해소	2분기	· FTA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4월
		·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통관애로 해소활동 전개	4월~